##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93

발의연월일: 2022. 8. 24.

발 의 자:김정재·정동만·김학용

서범수 · 강대식 · 김선교

조명희 • 서일준 • 유경준

박정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낙후된 쪽방촌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쪽방촌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 착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건 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 에 따른 토지 보상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 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제40조의7제2항제2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토지등소유자의"로 한다.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 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 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토지등소유자의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역산

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의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개 정 안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 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 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 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을 말한다)을 포
	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 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 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 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 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 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 ·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 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 다)할 수 있다.

-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 조의10제3항·제4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 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 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 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 보상 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 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 을 준용한다.

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안할 수 있다.

- 1. (생략)
-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u>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u>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 ⑧ (생 략)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 ② (생 략)
-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 ③ 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 --- 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 --- 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 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 단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건 --- 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 다.

1. (현행과 같음)
2
<u>토지등소유자의</u>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1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
<ul><li>■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①</li><li>・② (현행과 같음)</li></ul>

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인 「주택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본다.

1.	$\sim$	3.	(생	략)
4	$\sim$	7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